

사업 연도	. . . ~ . . .	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(갑)	법인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적용 이자율 선택

[] 원칙 : 가중평균차입이자율

[]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

[]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

[]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(선택사업연도 . . . ~ . . .)
을

2.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

① 성명	②가지급금 적수(積數)	③가수금 적수	④차감적수 (②-③)	⑤ 인정이자	⑥회사 계상액	시가인정범위		⑨ 조정액 (=⑦) ⑦ ≥ 3억이거나 ⑧ ≥ 5%인 경우
						⑦차액 (⑤-⑥)	⑧비율(%) (⑦/⑤)×100	
계								

3.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

⑩ 성명	⑪적용 이자율 선택방법	⑫가지급금 적수	⑬가수금 적수	⑭차감적수 (⑫-⑬)	⑮ 이자율	⑯인정이자 (⑭×⑮)	⑰회사 계상액	시가인정범위		⑳ 조정액 (=⑱) ⑱ ≥ 3억이거나 ⑲ ≥ 5%인 경우
								⑱차액 (⑰-⑱)	⑲비율(%) (⑱/⑰)×100	
계										

작성 방법

1. 적용 이자율 선택

가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, 같은 항 제1호, 제1호의 2 및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"√" 표시를 합니다.

나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만 적용하고, 그 외의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

다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.

(예) 2016. 1. 1. ~ 2016. 12. 31.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고 이후 2년간 계속 적용하는 경우 선택사업연도는 2016. 1. 1. ~ 2016. 12. 31.을 적습니다.

2. 가지급금적수(②, ⑫), 가수금적수(③, ⑬), ⑤인정이자란은 "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19호서식(을)]"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.

3. 조정액(⑨, ⑳)란에는 차액(⑦, ⑱)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(⑧, ⑲)란이 5%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.

4. ⑪적용이자율 선택방법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

구분	기재내용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3항제1호	㉑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3항제1호의2	㉒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3항제2호	㉓

5. ⑯인정이자란에는 ⑭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/365(윤년의 경우 366)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.

6.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.

사업 연도	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(을)	법 인 명	사업자등록번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

직책() 성명 ()												
1.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적수, 인정이자 계산												
대여기간		③ 연월일	④적 요	⑤차 변	⑥대 변	⑦잔 액 (⑤-⑥)	⑧ 일수	⑨가지급금 적수 (⑦×⑧)	⑩가수금 적수	⑪차감적수 (⑨-⑩)	⑫ 이자율	⑬인정이자 (⑪×⑫)
①발생 연월일	②회수 연월일											
계												
2.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적수 계산												
⑭연월일	⑮적 요	⑯차 변	⑰대 변	⑱잔 액	⑲일수	⑳가지급금 적수(⑱×⑲)	㉑가수금적수	㉒차감적수 (⑳-㉑)				
계												
3. 가수금 등의 적수 계산												
㉓연월일	㉔적 요	㉕차 변	㉖대 변	㉗잔 액	㉘일수	㉙가수금적수 (㉗×㉘)						
계												

작성 방법

1. ①발생연월일란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가지급금의 최초 발생연월일을 적고, ②회수연월일란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가지급금의 최종 회수연월일을 적습니다.
2. 연월일(③, ⑭, ⑳)란에는 대여·회수 등 잔액(⑦, ⑱, ㉑)란의 금액이 변동되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.
3. ⑫이자율란에는 자금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(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)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적습니다.
4. ⑬인정이자란에는 ⑪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/365(윤년 366)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.
5. 가수금적수란(⑩, ㉑) 중 가수금적수란(⑩)에는 ㉑가수금적수의 계란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가지급금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서대로 상계하여 적고, 가수금적수란(㉑)의 계란에는 "3. 가수금 등의 적수 계산"의 가수금적수란(㉑)의 계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⑨~⑪, ⑬, ⑳~㉑란의 계금액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19호 서식(갑)]의 ②~④, ⑤, ⑪~⑬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.
7.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.